2020 – 주요 세법개정안

지난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8월 25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날 의결된 16개 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2020년 세법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모든 사업용 자산 대상) 등 총 10개 제도 운영 중('18년 감면액: △1.6조 원)

* 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 **(개정)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 유도 →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

□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 ·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 · '21년 투자분 :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1년 말인 점 감안

• **투자세액공제 통합 · 단순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지원대상 · 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 · 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 대폭 확대**

—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 · 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부여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대기업 1% / 중견 3% / 중소 10%)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 적용

•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우대**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 적용(대기업 3% / 중견 5% / 중소 12%)

* 현재 「조특법」상 신성장 · 원천기술(12대 분야 223개 기술) → 디지털 · 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 예정(시행령 개정사항)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

* (현행) ①신성장 ·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②전체 R&D 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 ③전체 R&D비용 중 신성장 · 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 ④상시근로자 수 유지

* (개정) ②~④ 요건은 폐지

(2)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144①)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Mazars

— ①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②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예)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3)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법 §57, 소득법 §57)

□ **(이월공제기간 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 허용***

* (현행) 미공제액 소멸 →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법 §13 · §76의13, 소득법 §45)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

* (현행)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5)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41, 소득령 §83)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조금) 20만 원

— (그 외) 1만 원 –〉 3만원

□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8, 시행령 §5)

□ **세율 단계적 인하(△0.1%p)**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증세법)

구분	현행	'21~'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 타	0.45%	0.43%	0.35%

□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강화***

* (현행)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 → (개정)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다만, 증여가액에서 소득세 차감 허용)

(8)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지방세법 제103조의19)

□ **(현행)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 **(개정)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변경** → (개정이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계산방식 개선

□ **(적용시기) '21.1.1.이후 최초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Mazars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박 승 하 (공인회계사, 파트너)
Tax Partner, Business Advisory & Tax
Email: seung-ha.park@mazars.kr

허　영 (공인회계사, 이사)
Director, Business Advisory & Tax
Email: young.huh@mazars.kr

나 경 은 (세무사, 시니어 매니저)
Senior Manager, Business Advisory & Tax
Email: gyeong-eun.na@mazars.kr

Mazars Sebit Korea
711 Eonju-ro, 2nd Floor,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 (0)2 3438 2400
www.mazars.kr

© Mazars